



6 총회신학원 보고

제104회기 총회신학원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A. 법 인

1. 조 직

1) 재단이사회

- 이 사 장 직무대행 : 이승현
- 이 사 : 조경호, 임철일, 김진영, 김영철, 박태선, 김미량, 이흥훈, 김영희, 김기천, 손영실, 권성연
- 감 사 : 김정환

2) 직원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법인사무국	국 장	권 주 식	
법인사무국	과 장	유 상 용	
법인사무국	직 원	최 가 슬	

2. 2019학년도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결산서

1) 법인일반회계

(2019.3.1.-2020.2.29.단위 : 원)

구 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비고
수 입	전입 및 기부수입	684,000,000	566,716,605	수익사업 전입금 105,316,605 일반 기부금 461,400,000
	교육외수입	13,000,000	13,754,659	예금이자 13,754,659
	미사용전기이월자금	0	91,905,584	
	수입 계	697,000,000	672,376,848	
지 출	보수	185,000,000	231,611,625	직원급여 173,143,717 직원법정부담금 10,412,640 직원퇴직금 48,055,814
	관리운영비	207,000,000	305,810,314	일반관리비 14,813,310 (여비교통비 7,853,320 소모품비 515,360 보험료 52,770)

구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비고
				통신비 124,600 제세공과금 4,785,820 지급수수료 1,481,440 운영비 290,997,004 (일반용역비 66,123,600 업무추진비 13,263,147 회의비 41,550,000 기타운영비 170,060,257)
	전출금	300,000,000	0	법정부담전출금 0
	예비비	5,000,000	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0	0	
	고정자산매입지출	0	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134,954,909	
	지출 계	697,000,000	672,376,848	

2) 법인수익회계

(2019.3.1.-2020.2.29.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비고
수	교육 외 수입	276,600,000	354,848,907	예금이자수입 437,551 잡수입 465,483 임대료수입 353,945,873
	고정부채입금	70,000,000	0	
	기본금	0	0	
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0,000,000	286,704,540	
	수입 계	366,600,000	641,553,447	
지출	보수	34,000,000	32,338,200	직원급여 30,602,660 직원법정부담금 1,735,540
	관리운영비	115,600,000	140,903,277	시설관리비 40,154,897 (건축물관리비 34,136,767 보험료 4,388,130 기타시설관리비 1,630,000) 일반관리비 100,582,194 (제세공과금 89,126,446 소모품비 2,101,310 통신비 419,862 지급수수료 8,934,576)



구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비고
				기타운영비 166,186
				감가상각비 67,604,797
	교육외비용	108,000,000	102,400,954	지급이자 102,400,954
	전출금	84,000,000	105,316,605	수익사업 전출금 105,316,605
	예비비	5,000,000	0	
	고정자산매입지출	0		
	고정부채상환	20,000,000	5,004,76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255,589,651	
	지출 계	366,600,000	641,553,447	

3. 2020학년도 법인 예산서

1) 2020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자금예산서

(1) 수 입

(2019.3.1.-2020.2.29.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2020 회계연도 예산	2019 회계연도 추경	2020 예산 산출 내역
수	전입 및 기부수입	650,000,000	684,000,000	수익사업전입금 100,000,000 기부금수입 550,000,000
	교육외수입	120,000,000	13,000,000	예금이자 8,000,000 잡수입 5,000,000
입	미사용전기이월자금	0	0	
	수입 계	770,000,000	697,000,000	

(2) 지 출

(2019.3.1.-2020.2.29.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2020 회계연도 예산	2019 회계연도 추경	2020 예산 산출 내역
지 출	보수	192,000,000	185,000,000	직원보수 168,000,000 직원법정부담금 10,000,000 직원퇴직적립금 14,000,000
	관리운영비	223,000,000	207,000,000	시설관리비 1,000,000 일반관리비 42,000,000 운영비 180,000,000
	교육외비용	100,000,000	0	잡손실
	전출금	250,000,000	300,000,000	사학연금 전출금

구분	계정과목	2020 회계연도 예산	2019 회계연도 추경	2020 예산 산출 내역
				학교 부담 추진
	예비비	5,000,000	5,00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0	
	지출 계	770,000,000	697,000,000	

2) 2019학년도 법인 수익회계 자금예산서

(1) 수 입

(2019.3.1.-2020.2.29.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2020 회계연도 예산	2019 회계연도 추경	2020 예산 산출 내역
수	운영활동에 의한 현금유입	305,000,000	276,600,000	예금이자수입 10,000,000
				임대료수입 275,000,000
				잡수익 20,000,000
입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유입	65,000,000	70,000,000	임대보증금수입 65,000,000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40,000,000	20,000,000	
	수입 계	410,000,000	366,600,000	

(2) 지 출

(2019.3.1.-2020.2.29.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2020 회계연도 예산	2019 회계연도 추경	2020 예산 산출 내역
지 출	관리운영비	385,000,000	341,600,000	인건비 36,000,000
				복리후생비 3,000,000
				세금과공과 74,000,000
				시설관리비 64,000,000
				수익사업전출금 (법인일반회계) 100,000,000
				이자비용 108,000,000
	예비비	5,000,000	5,000,000	
	임대보증금 반환	20,000,000	20,00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0	
	지출 계	410,000,000	366,600,000	



B. 총신대학교

1. 보직 (2020. 8. 7. 기준)

직 위	성 명	비 고
총장	이재서	
대학 부총장	손병덕	
신학대학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장	김창훈	
통합대학원원장	김성욱	
경건훈련원장	정승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현	
교원인사연구처장	이희성	
대학 교무지원처장	허계형	
입학인재개발처장	백은령	
교육복지처장	정대현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장	문병호	
신학대학원 대외협력처장	김희석	
대학원 교학지원처장	양혜원	
대학 교목실장	함영주	
경건훈련처장	정승원	
중앙도서관장	이희성	
산학협력단장	손병덕	
개혁신학연구처장	박영실	
양지도서관장	박영실	
미래지식교육처장	이성희	
총무지원처장대우	이경립	

2. 교원현황 (2019. 8. 7. 기준)

1) 대학

(1) 대학

학 과	성 명	전 공
신 학 과(11)	장 성 민	기독교철학
	정 창 욱	신 약 학
	안 인 섭	역사신학
	박 형 대	신 약 학
	이 희 성	구 약 학
	황 선 우	구 약 학

학 과	성 명	전 공
	김 주 한	신 약 학
	김 남 준	실천신학
	박 희 석	실천신학
	나 영 환	조직신학
	임 창 일	구 약 학
기독교교육과(5)	유 은 희	기독교교육
	함 영 주	기독교교육방법
	김 수 환	컴퓨터과학교육
	채 경 희	통일교육, 북한학
	이 종 민	기독교교육
영어교육과(6)	함 영 용	영어학
	이 성 희	영어교육학
	김 영 속	영어교육학
	이 지 연	영어교육학
	최 윤 희	영어교육학
	한 미 야	영미문학
역사교육과(5)	조 훈	동양사
	김 봉 수	서양사
	권 태 경	서양사
	허 은 철	역사교육
	송 응 섭	한국사
유아교육과(6)	정 희 영	유아교육
	김 미 경	유아교육
	허 계 형	유아교육
	정 대 현	유아교육
	김 정 희	유아교육
	정 희 정	유아교육
교회음악과(8)	김 수 연	바이올린
	정 지 강	피아노
	장 영 희	오르간
	하 재 송	음악이론
	김 수 진	성악
	유 지 수	피아노
	한 경 석	성악
	이 원 정	작곡
아동학과(3)	강 란 혜	아동발달심리
	조 혜 정	기독교교육(아동)



학 과	성 명	전 공
	강 유 진	가족학
사회복지학과(4)	손 병 덕	사회복지
	백 은 령	사회복지실천
	양 혜 원	사회복지실천
	전 미 애	사회복지
중독재활상담학과(1)	조 현 섭	중독재활상담
교육학과(3)	주 영 흠	교육철학
	정 한 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김 한 나	교육행정
호크마교양교육원(3)	문 용 식	기독교문학
	Heidi Nam	교양영어
	Scott Shepherd	교양영어
전임교원 55명		

(2) 산업교육학부

학 과	성 명	전 공
아동학과(2)	김 정 열	청소년지도
	이 하 원	아동심리 및 언어인지
유아보육학과(3)	김 성 원	유아교육
	허 미 애	유아교육
	방 은 영	유아교육
전임교원 5명		

2) 대학원

(1) 신학대학원

학 과	성 명	전 공
구 약 신 학(6)	김 지 찬	구약학
	김 희 석	구약학
	박 철 현	구약학
	오 성 호	구약학
	김 대 응	구약학
	김 영 욱	구약학
신 약 신 학(5)	심 상 법	신약학
	김 상 훈	신약학
	이 상 일	신약학

학 과	성 명	전 공
	조 호 형	신약학
	이 품 인	신약학
조 직 신 학(6)	김 광 열	조직신학
	이 상 원	조직신학
	문 병 호	조직신학
	강 용 산	조직신학
	정 승 원	조직신학
	이 상 응	조직신학
역 사 신 학(6)	박 용 규	교회사
	박 영 실	교회사
	윤 종 훈	교회사
	김 요 섭	교회사
	정 원 래	교회사
	서 창 원	교회사
실 천 신 학(8)	이 관 직	실천신학
	김 창 훈	실천신학
	오 태 균	실천신학
	박 현 신	실천신학
	양 현 표	실천신학
	김 대 혁	실천신학
	안 은 찬	실천신학
	윤 영 민	실천신학
선 교 신 학(2)	김 성 태	선교학
	배 춘 섭	선교학
전임교원 33명		

(2) 교육대학원

소 속 학 과	성 명	전 공
유아교육전공(3)	강 은 주	유아교육
	신 현 정	유아교육
	김 정 준	유아교육
전임교원 3명		



(3) 선교대학원

소 속 학 과	성 명	전 공
선교학과(3)	김 성 욱	선교학
	정 병 관	선교학
	김 희 백	국제리더십
전임교원 3명		

(4) 목회신학전문대학원

학 과	성 명	전 공
목회학과(7)	성 남 용	선교학
	박 태 현	실천신학
	채 이 석	교회성장학
	정 우 흥	설교학
	안 영 혁	설교학
	고 광 석	선교학
	김 용 욱	실천신학
전임교원 7명		

(5) 상담대학원

소 속 학 과	성 명	전 공
성경적상담(3)	김 준	성경적 상담
	김 규 보	성경적 상담
	황 영 아	성경적 상담
전임교원 3명		

3) 평생교육원

소 속 학 과	성 명	전 공
평생교육원(4)	송 준 인	조직신학
	정 규 훈	동양철학
	최 광 수	사회복지학
	김 선 영	관현악
전임교원 4명		

3. 직원현황

(2020. 08. 05. 기준)

부서명	팀명	부속·부설기관	처·실장	팀장	부팀장	팀원
부속부설기관						강문진 한점숙
기획조정실	기획혁신팀		조기현			이성준 유원근 오영일 이학왕
경건 훈련원	교목실					김정호
	경건훈련처			김은희		구자봉 심순희
교원인사연구처	교원인사연구팀			최성연		허선경 박상협 최신혜 곽은정
대외협력홍보처	대외협력홍보팀				김승철	방세영 김지혜 송준민
산학협력단(특수법인)						정유경
대학(학부)	학과행정지원팀	교육학과			박만규	오지현
교무지원처	교무지원팀			나용균		김화현 이지영 맹다니엘
		호크마교양교육원			김재령	
		교수-학습개발원			김영기(연)	
		매체지원실			정태성	
입학인재개발처	입학인재개발팀			양관모		이경근 이예지 유승철
교육복지처	교육복지팀			이한나		임성희
		충신상담센터			이후주(연)	
		장애학생지원센터			김준수	
		보건실			양갑필 김종덕	
미래지식교육처	미래지식교육팀	사당평생교육원			김진효	김아정 정수지 임고운
		원격평생교육원				유진희 이시운 탁명진 황금애 윤단비 유재인 김학철
총무지원처	총무시설팀			이경립	김충훈	남상민 민성호 임자은 홍대표 권예림 박준호
		(기계설비)				이철우
		(전기음향)				문춘기
		(영선 및 관리)				전광표 이광선 정한석 안정숙
		(경비실)				정양언 원진연 김영규
		종합관식당				성효숙
		대학부총장비서실				
		대학원부총장비서실				
	사당생활관		김천일(사목)			
	예비군대대					
재무회계팀			최선숙			노지영 김종현 천우신 황교성
전산정보팀			김선영			윤석일 진대훈 김상혁 김중희
대학원 교학지원처	대학원 교학입학팀			곽훈		이은영 문호영 이수진
	계약학과팀			(곽훈)		정남희 장도희
신대원 교무지원처	교무입학팀			송치명		정상균 서영주 나영민 임한나
신대원 대외협력처	신대원 대외협력팀			(송치명)		문동일 나성국 이원겸



부서명	팀명	부속·부설기관	처·실장	팀장	부팀장	팀원
개혁신학연구처	개혁신학연구팀			김성수		강신구 이은숙 차윤환 박성우
총무지원처	양지시설지원팀			윤희수		장원철 홍충식
		(기계설비)			우인구 정진호	
		(버스기사)			장영갑	
		(영선 및 관리)			권성화	
		신대원부총장비서실			김지혜(비서)	
양지생활관					김동현	

4. 학생현황

1) 대학

학과명	학년				학사학위취득유예생*	휴학생	계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 학 과	101	110	97	114	0	145	567	
기독교교육과	33	33	37	39	0	33	175	
영 어 교육 과	29	27	29	33	0	30	148	
역 사 교 육 과	27	27	33	44	0	42	173	
유 아 교 육 과	49	49	58	61	0	13	230	
교 회 음 악 과	71	61	70	73	0	53	328	
아 동 학 과	19	19	20	26	1	16	101	
사 회 복 지 학 과	36	50	49	42	1	43	221	
중독재활상담학과(주)	10	16	17	15	0	11	69	
중독재활상담학과(재)	0	0	2	6	0	0	8	
아동학과(계약)	0	4	12	35	-	0	51	
아동상담심리학과(계약)	0	0	10	0	-	0	10	
계	375	396	434	488	2	386	2,081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근거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임

2) 신학대학원

구분	석사		계
	재학생	휴학생	
1학년	408	60	468
2학년	419	30	449
3학년	401	18	419
계	1,228	108	1,336

3) 대학원

(1) 일반대학원

과정	학과/전공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휴학생	계
석사 과정	신 학 과	75	1	64	3	-	-	58	201
	기독교교육학과	3	0	6	0	-	-	2	11
	유아교육학과	0	0	1	0	-	-	2	3
	유아교육학과(계약)								
	교회음악학과	-	-	-	-	-	-	-	-
	계								
박사 과정	신 학 과	15	0	12	3	9	0	11	50
	기독교교육학	3	1	3	1	1	0	2	11
	기독교유아교육	2	1	2	1	5	0	1	12
	기독교사회복지학	2	0	1	1	3	0	2	9
	유아교육학과(계약)								
	성경적상담학	3	0	5	0	3	1	2	14
	계								
합계									

(2)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11	0	9	0	-	-	6	26
박사과정	14	2	9	0	11	4	16	56
계	25	2	18	0	11	4	22	82

(3) 선교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38	4	26	5	7	80
계	38	4	26	5	7	80

(4) 교육대학원

과정	전공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휴학생	계
석사 과정	기독교교육	12	0	6	0	2	9	29
	영어교육	0	0	1	0	0	0	1
	유아교육	33	1	37	5	26	14	116
	유아교육학(계약)							
	계							



(5) 사회복지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13	2	10	1	12	7	45
계	13	2	10	1	12	7	45

(6) 상담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30	0	24	4	21	15	94
계	30	0	24	4	21	15	94

(7) 교회음악대학원

과정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휴학생	계
석사과정	7	5	10	3	11	8	44
계	7	5	10	3	11	8	44

5. 2019학년도 총신대학교 결산서

1) 교비회계

(기간: 2019.3.1~2020.2.29)

(단위: 원)

구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수입	등록금및수강료수입	29,988,040,000	28,066,244,648	1,921,795,352	입학금 880,841,000
					수업료 24,839,002,752
					단기수강료 2,346,400,896
	전입및기부수입	9,561,675,000	8,091,390,844	1,470,284,156	기부금 3,620,146,344
					국고보조금 4,471,244,500
	교육부대수입	2,789,162,000	2,396,592,608	392,569,392	입시수수료 227,053,000
					증명사용료 1,984,748,198
	교육외수입	879,273,000	962,048,870	-82,775,870	기타교육부대 184,791,410
					예금이자 926,029,827
투자외기타자산	1,580,000,000	580,000,000	1,000,000,000	잡수입 36,019,043	
				임차보증금회수 580,000,000	
고정자산매각수입	0	0	0		
고정부채입금	109,500,000	78,500,000	31,000,000	임대보증금수입 78,500,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466,536,651	4,425,269,096	41,267,555		
	수입합계	49,374,186,651	44,600,046,066	4,774,140,585	
지	보수	22,267,714,000	18,118,665,928	4,149,048,072	교원보수 12,270,027,661 직원보수 5,848,638,267

구분	계정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출	관리운영비	8,328,428,000	6,124,477,660	2,203,950,340	시설관리비 3,168,361,091 일반관리비 1,966,707,958 운영비 989,408,611
	연구학생경비	15,562,823,000	11,963,391,464	3,599,431,536	연구비 397,104,130 학생경비 11,340,052,979 입시관리비 226,234,355
	교육외 비용	60,000,000	65,416,958	-5,416,958	잡손실 65,416,958
	전출금	0	0	0	
	예비비	269,192,000	0	269,192,000	
	투자외기타자산	1,399,583,000	652,533,701	747,049,299	임의연구기금 24,904,743 임의건축기금 322,439,016 임의장학기금 85,210,108 임의퇴직기금 29,160,820 임의특정목적기금 190,819,014
	고정자산매입지출	1,376,946,651	1,225,420,802	151,525,849	기계기구 646,840,440 집기비품 252,129,590 도서구입 326,450,772
	고정부채상환	109,500,000	70,000,000	39,500,000	임대보증금환급 70,000,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6,380,139,553	-6,380,139,553	
	지출합계	49,374,186,651	44,600,046,066	4,774,140,585	

2) 신대원장학기금

(2020. 02. 29. 현재)

순서	기탁자	설치연월일	합계	비고
1	100주년출판기념	06.10.25	48,421,115	
2	갈릴리여선교회	88.11.30	8,923,267	
3	강상현	88.02.24	27,698,508	
4	강응섭	81.03.15	43,210,348	
5	기타(해외유학생)	02.07.02	45,449,769	
6	김득용	84.04.07	3,231,064	
7	김의원 교수	06.12.27	32,972,284	
8	김의환	97.11.20	59,191,043	
9	김진택	04.08.14	9,393,676	
10	김희보	81.03.16	58,049,366	
11	대학장학기금	99.10.28	10,665,563	
12	동지상사	91.03.14	4,990,192	



순서	기탁자	설치연월일	합계	비고
13	류재양	04.12.22	5,485,123	
14	박병호	98.01.13	26,637,681	
15	백남조	81.03.16	51,332,581	
16	벤앤장학	87.04.06	13,975,591	
17	서독교회	84.03.08	10,040,325	
18	서만수	81.03.16	3,327,028	
19	손두환	83.04.16	26,572,175	
20	신대원 교수회	04.03.20	6,043,205	
21	신정인	83.03.09	14,901,358	
22	안명복	98.01.03	15,593,652	
23	엄묘선	81.03.16	17,199,984	
24	오길순	93.05.31	77,556,095	
25	은태철	00.03.01	15,410,340	
26	이정자	93.08.05	20,630,483	
27	이정현	03.02.17	12,530,451	
28	이종옥(염광교회)	01.09.08	156,844,931	
29	정문숙	02.08.24	24,507,964	
30	정성구	88.11.10	3,449,814	
31	조영덕	86.02.21	14,970,744	
32	채기은	98.03.01	3,392,045	
33	천정웅	81.08.30	23,825,005	
34	초량교회	94.02.08	4,716,062	
35	총신여동문회	84.01.30	58,416,075	
36	충현교회	81.03.16	196,371,345	
37	한병기	89.07.30	14,659,823	
38	홍영기	83.03.02	7,007,815	
39	대구동신교회	05.11.28	32,201,218	
40	새한교회	06.03.29	76,881,606	
41	주기철장학회	82.10.26	58,312,066	
총계			1,344,988,778	

6.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1) 대학 2019학년도

(1) 교내장학금

(2019.3.1.~2020.2.29.)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입학장학금(수,차석)	2	3,510,000		
입학장학금(학과우수)	15	33,338,800		
과수석장학금	10	17,023,000	9	20,749,000
성적우수(A)	74	54,909,000	103	89,468,500
성적우수(B)	43	22,180,000	48	25,169,000
성적우수(C)	42	18,600,000	46	18,762,000
실기우수장학금	4	4,000,000	3	3,000,000
어학우수장학금	5	5,226,000	9	8,274,000
교환학생장학금(생)			6	13,500,000
근로장학금(근)	114	73,166,875	110	78,446,215
봉사장학금	66	35,940,000	72	39,218,400
보훈장학금(교내대응)	6	11,410,000	8	14,059,000
은혜장학금A	39	95,286,000	37	46,834,000
교직원장학금(직계)	5	17,564,000	3	8,178,000
사회봉사장학금	1	478,000	7	3,008,000
교역자자녀장학금	13	13,056,000	16	12,390,000
북한이탈주민장학금(교내대응)	5	8,410,000	7	11,374,000
가족장학금	6	5,266,000	8	5,558,000
외국인장학금(교내)	9	16,417,400	8	15,456,600
사랑장학금	24	29,492,000	36	46,514,000
국가근로장학금(교내대응)	96	42,441,380	86	44,350,310
은혜장학금B	179	181,445,200	443	298,187,720
홍보대사장학금(근)	13	20,000,000	12	18,400,000
튜터장학금(근)	64	20,000,000	61	19,985,000
지성장학금	1	3,108,000	1	2,608,000
인성장학금	2	7,036,000	3	6,352,000
국제화장학금	5	17,303,000		
보훈장학금(교내:본인전액)	1	3,262,000	1	3,262,000
임용고시장학금	8	3,662,000	11	4,570,000
재직자(중독재활상담)	7	7,000,000	8	7,060,000
은혜장학금B(장학사정관)	6	8,156,600	9	11,946,000
성적향상장학금	3	1,500,000	4	2,000,000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학과추천장학금	10	9,086,000	10	9,662,000
정보화장학금	1	500,000		
은혜장학금C(생)	12	2,400,000	16	3,200,000
S마일리지장학금(생)	45	11,282,000	83	24,003,000
합계	936	803,455,255	1,284	915,544,745

(2) 외부장학금

(2019.3.1.~2020.2.29.)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동창회장학금	2	3,592,500		
보훈장학금(보훈처)	6	11,410,000	8	14,059,000
학복위장학금(교외)	44	18,799,000		
북한이탈주민장학금(통일부)	5	8,410,000	7	11,374,000
삼일교회장학금	21	20,000,000	24	20,000,000
국가근로장학금(교외)	124	311,410,520	135	297,796,740
총신백만기도후원회장학금	43	41,190,500	56	51,308,000
국가장학금1유형	568	1,167,298,200	557	1,160,773,500
국가장학금2유형	205	130,693,000	194	72,957,000
서울장학재단장학금	20	16,000,000	24	15,000,000
근로(신대원동창회)장학금			1	1,000,000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255	616,689,800	223	528,906,000
외부기탁장학금(단회성)	17	20,654,600	15	14,074,000
총동창회장학금(생활비)	4	3,500,000	2	2,500,000
외부기탁장학금(생활비)	35	34,903,000	20	25,000,000
외부기탁장학금(근로)			1	3,000,000
군중사관후보생장학금(총신백만)	21	40,108,000	23	39,829,000
열린교회장학금	2	2,020,000	2	3,422,000
아산재단장학금	2	5,616,000	2	6,216,000
푸른등대기부장학금(생)			1	1,500,000
푸른등대삼성SOS장학금(생)	2	3,000,000	2	3,000,000
교목실기탁장학금	1	1,570,000	2	2,842,000
형석장학금	2	1,422,000	4	3,025,000
형석장학금(생활비)	9	8,578,000	9	6,975,000
희망사다리2유형(고졸후학습자)	2	6,200,000	3	7,150,000
입학금감축대응지원장학금	428	75,582,200	7	1,227,800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KB국민은행장학금			21	10,000,000
백만기도후원장학금(국장2대응)	97	52,138,200	76	26,076,600
농어촌희망재단			3	1,500,000
합계	1,915	2,600,785,520	1,422	2,330,511,640

2) 신학대학원

(1) 교내장학금

(2019. 3. 1 - 2020. 2. 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입학성적우수(수석)	7,233,000	2	9,553,000	3	16,786,000	5
입학성적우수(차석)	주기철목사장학회		주기철목사장학회		주기철목사장학회	
입학성적(3등-10등)	6,948,900	3	6,948,900	3	13,897,800	6
입학성적(과목별)	3,309,000	2			3,309,000	2
학기성적(A)전액	6,244,000	2	6,244,000	2	12,488,000	4
학기성적(C)반액	57,742,000	37	85,947,000	54	143,689,000	91
원 호 가 족	2,000,000	5	2,800,000	7	4,800,000	12
기 여	44,735,000	75	46,344,800	80	91,079,800	155
친 족	19,293,000	12	23,991,000	15	43,284,000	27
외 국 인 학 생	12,112,000	9	12,112,000	9	24,224,000	18
외국인학생(신입생)	5,563,500	4	5,563,500	4	11,127,000	8
장 애 인	4,000,000	6	2,800,000	4	6,800,000	10
외국학교 교환학생	3,152,000	1	3,152,000	1	6,304,000	2
가 계 (1)	95,500,000	47	102,431,500	50	197,931,500	97
가 계 (2)	125,000,000	125	276,000,000	276	401,000,000	401
교 직 원 (직 계)						
외국인학생(글로벌)	65,572,000	41	65,572,000	41	131,144,000	82
총 계	458,404,400	371	649,459,700	549	1,107,864,100	920



(2) 외부장학금

(2019 3. 1 - 2020. 2. 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외 부 기 탁	177,204,000	79	317,957,500	432	495,161,500	511
외부기탁(생활비)	3,024,000	4	8,128,000	12	11,152,000	16
외부기탁(과목수강자)	39,680,600	23			39,680,600	23
외부기탁(글로벌생활비)	9,600,000	20	6,584,000	14	16,184,000	34
외부기탁(글로벌수업료)	43,699,500	21	38,421,000	24	82,120,500	45
주기철목사기념장학회	7,293,000	2	9,613,000	3	16,906,000	5
총 신 백 만 기 도 후 원 장 학 금			9,000,000	9	9,000,000	9
총 신 백 만 기 도 후원장학금(의무입사비)	115,170,000	392	32,410,000	103	147,580,000	495
총 신 백 만 기 도 후원장학금(글로벌의무입사비)			11,730,000	40	11,730,000	40
총 신 백 만 기 도 후원장학금(군목후보생)	117,631,000	37	114,479,000	37	232,110,000	74
총 신 백 만 기 도 후원장학금(제주노회)	30,462,000	4	31,262,000	4	61,724,000	8
총 신 백 만 기 도 후원장학금(근로)	84,292,750	157	79,397,990	151	163,690,740	308
총 계	628,056,850	739	658,982,490	829	1,287,039,340	1,568

7. 국제협력 분야

1) 외국대학과 교류현황 (MOU 체결교)

체결일	대학(기관)명	국가
2015.05	Union Biblical Seminary	인도
2015.05	The Theological University of Apeldoorn	네덜란드
2015.04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
2015.03	Christian University of Indonesia(UKI) Jakarta	인도네시아
2014.05	Calvin Theological Seminary	미국
2014.02	The SCD Korean School of Theology, Sydney College of Divinity	오스트레일리아
2014.	Theologische Universiteit Kampen	네덜란드
2013.12	Africa Institute of Music	우간다
2013.05	Driestar Christian University	네덜란드
2013.05	Zwolle Reformed University	네덜란드
2013.01	Preschool Department of East China Normal	중국

체결일	대학(기관)명	국가
	University	
2012.10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미국
2012.05	VU University Amsterdam	네덜란드
2011.11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미국
2011.07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벨기에
2011.04	Azusa Pacific University	미국
2010.08	Westhill International School	필리핀
2010.08	Asia Pacific Christian College and Seminary	필리핀
2010.04	Kuyper College	미국
2010.04	King's University College	캐나다
2010.04	Trinity Christian College	미국
2010.04	Redeemer University College	캐나다
2008.10	Wales Evangelical School of Theology (Union School of Theology)	영국
2006.10	Dordt College	미국
2005.05	Eastern University	미국
2005.04	Biola University	미국
2005.03	Camotes Hillside Academy	필리핀
2005.01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미국
1998.08	Moscow State University -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러시아
1998.07	Kobe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일본
1998.04	University of Pretoria	남아공
1997.04	Geneva College	미국
1996.07	Belhaven College	미국
1996.07	Mackenzie Presbyterian Institute	브라질
1996.05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미국
1996.0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미국
1996.04	Jerusalem University College	이스라엘
1996.04	University of Stellenbosch	남아공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20. 4 기준)

- (1) 대학: 8명
- (2) 대학원: 70명
- (3) 한국어학당(어학연수생): 60명



8.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의 귀중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총신대학교 교비회계의 2020년 2월 29일과 2019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및 합산운영계산서, 2020년 2월 29일과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산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의 2020년 2월 29일과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금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계

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총신대학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2020년 2월 29일과 2019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수지와 재무성과와 2020년 2월 29일과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29일과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자금수지를 일반기업회계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과 공시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항복문서 건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에 의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견

우리의 확인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강 중 발

2020년 5월 26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청부된 학교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9.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서

1) 수 입

(당기 : 2020. 03. 01부터 2021 02. 28 까지 단위:천원)

(전기 : 2019. 03. 01부터 2020 02. 29 까지 단위:천원)

계정과목	2020학년도 예산액		2019학년도 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등록금수입	27,967,352	54.0	29,988,040	60.7	△ 2,020,688	-6.7
전입및기부수입	11,475,433	22.2	9,561,675	19.4	1,913,758	20.0
교육부대수입	2,744,309	5.3	2,789,162	5.6	△ 44,853	-1.6
교육외수입	625,366	1.2	879,273	1.8	△ 253,907	-28.9
투자외기타자산수입	1,600,000	3.1	1,580,000	3.2	20,000	1.3
고정자산매각수입	0	0.0	0	0.0	0	0.0
유동부채입금	0	0.0	0	0.0	0	0.0
고정부채입금	153,420	0.3	109,500	0.2	43,920	40.1
기본금	0	0.0	0	0.0	0	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223,548	13.9	4,466,537	9.0	2,757,011	61.7
수입합계	51,789,428	100.0	49,374,187	100.0	2,415,241	4.9

2) 지 출

(당기 : 2020. 03. 01부터 2021 02. 28 까지 단위:천원)

(전기 : 2019. 03. 01부터 2020 02. 29 까지 단위:천원)

계정과목	2020학년도 예산액		2018학년도 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보수	23,034,188	44.5	22,267,714	45.1	766,474	3.4
관리운영비	7,373,360	14.2	8,328,428	16.9	△ 955,068	-11.5
연구학생경비	15,207,363	29.4	15,562,823	31.5	△ 355,460	-2.3
교육외비용	50,000	0.1	60,000	0.1	△ 10,000	-16.7
전출금	0	0.0	0	0.0	0	0.0
예비비	325,300	0.6	269,192	0.5	56,108	20.8
투자외기타자산지출	4,582,207	8.8	1,399,583	2.8	3,182,624	227.4
고정자산매입지출	1,063,590	2.1	1,376,947	2.8	△ 313,357	-22.8
유동부채상환	0	0.0	0	0.0	0	0.0
고정부채상환	153,420	0.3	109,500	0.2	43,920	40.1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0.0	0	0.0	0	0.0
지출합계	51,789,428	100.0	49,374,187	100.0	2,415,241	4.9



10. 총회신학원

1) 학생현황

2020.08. 현재

구 분	목회전문		계
	재학생	휴학생	
1학년	0	2	2
2학년	3	0	3
3학년	0	0	0
합 계	3	2	5

2) 2019년도 장학금 지급현황

(1) 교내장학금

(2019. 3. 1 - 2020. 2. 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입 학 성 적 우 수	2,766,000	1	2,766,000	1	5,532,000	2
학기성적우수(A)전액	5,532,000	2	2,766,000	1	8,298,000	3
학기성적우수(C)반액	1,383,000	1	2,766,000	2	4,149,000	3
원 호 가 족						
기 여	1,950,000	4	900,000	2	2,850,000	6
친 족	2,766,000	2	2,766,000	2	5,532,000	4
외 국 인 학 생	1,200,000	2	1,800,000	3	3,000,000	5
장 애 인	1,700,000	2	1,700,000	2	3,400,000	4
교 직 원 (직 계)						
가 계(1)	10,900,000	7	10,900,000	7	21,800,000	14
가 계(2)	12,000,000	12	19,000,000	19	31,000,000	31
총 계	40,197,000	33	45,364,000	39	85,561,000	72

(2) 외부장학금

(2019. 3. 1 - 2020. 2. 28.)

장학금명	1학기		2학기		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외 부 기 탁	2,000,000	2	7,350,000	8	9,350,000	10
총 후 신 백 만 기 도 원 장 학 금						
총 후 신 백 만 기 도 원 장 학 금(근로)	2,505,000	6	2,463,250	6	4,968,250	12
총 계	4,505,000	8	9,813,250	14	14,318,250	22

11. 부속/부설기관 현황

1) 도서관

(2020. 8. 1. 현재)

구 분		내 용			비 고	
개관 시간 (학기중)	사당 도서관	4층 일반열람실 / 5층 대학원 열람실		06:00~24:00	대학 대학원	
		3층 자료실, 대출실 (단행본/참고봉사)	월, 화, 목	09:00~22:00		
			수, 금	09:00~18:00		
	양지 도서관	2층, 4층 자유열람실		24시간	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4층 글로벌라이브러리		09:00~16:30		
		3층 자료실, 대출실 (단행본/참고봉사)	월, 화, 수, 목	08:00~22:00		
금	08:00~17:00					
시 설	사당 도서관	대학원 열람실	5층 열람실	296.1㎡	계	8863.81㎡
		일반열람실	4층 열람실	506.52㎡		
		일반자료실 참고봉사실	서가, 전자정보실 정기간행물실	1742.7㎡		
		도서관 로비	북카페	618.49		
	양지 도서관	자유열람실	2층 열람실 개혁신학연구센터	1,628㎡	계	5,700㎡
		일반자료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학위논문실	1,628㎡		
글로벌라이브러리		4층 열람실 귀중본실	2,444㎡			
열람석	사당 도서관	대학원 열람실	5층 열람실	134석	계	702석
		일반열람실	4층 열람실	371석		
		자료실	자료실,북카페	54석		
			전자정보실	45석		
	양지 도서관	자유열람실	2층 열람실 개혁신학연구센터	318석	계	1,108석
		일반자료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학위논문실	221석		
글로벌라이브러리		4층 열람실 귀중본실	569석			
소장 자료	사당 도서관	도서자료	국내서	278,719권	계	673,547권
			국외서	394,828권		
	양지 도서관	연속간행물	375종		계	375종
		비도서자료	광디스크	4,444점	계	13,241점
			테이프	1,580점		
			마이크로필름	414점		
마이크로피시	6,795점					



구 분		내 용			비 고	
	전자자료	기타	8점		/	
		전자저널	6종			
		웹DB	14종			
		e-book	208,666종			
		e-learning	2종			

2) 생활관

구 분		사당동캠퍼스		양지캠퍼스			계
		남자	여자	제1	제2	제3	
연 건 평		515평	208평	1,441평	687평	2,495평	5,346평
수 용 인 원(실)		240명	63명	668명	264명	448명	1,683
		62실	16실	167실	66실	112실	423
식 당 규 모		종합관학생: 260 석 종합관교직원: 72 석			-	학생: 410석 교직원: 80석 VIP: 20석	842석
부 대 시 설	사 무 실	1		-	-	1	2
	사 목 실 (관 장)	1		-	-	-	1
	내 빈 실	-	-	-	-	-	0
	외 빈 숙소	-	-	-	-	5	5
	교 수 숙 소	-	-	-	-	-	0
	직 원 숙 소	-	-	-	-	-	2
	휴 게 실	2	1	3	3	5(여자포함)	14
	Internet cafe	-	-	-	-	-	1
	샤 워 실	4	2	8	3	10	27
	화 장 실	4	2	8	7	12	35
	식 당	-	-	-	-	1	1
	교수연구실	-	-	-	-	27	27
	강 의 실	-	-	-	-	2	2
	의 무 실	-	-	-	-	1	1
	상 담 실	-	-	-	-	-	0
	컴 퓨 터 실	-	-	-	-	-	0
	인 터 넷 실	-	-	-	-	-	0
	이 발 소	-	-	-	-	-	0
	회 의 실	-	-	1(사생회실)	-	-	1
안 내 실	1		-	-	-	1	
보 일 러 실	1	1	-	1	-	3	

구 분	사당동캠퍼스		양지캠퍼스				계
	남자	여자	제1	제2	제3	복지관	
매 점	-	-				1	1
서 점	-	-				1	1
체 력 단 련 실	1	-		2			3

3) 기타 부속 / 부설기관 및 연구소

구분	기 관 명	주요사업내용	비 고
부속·부설기관	대 학 부 속 유 치 원	비학령기 아동교육	
	신 학 지 남 사	교수연구발표, 한국교회학의 신학방향제시	계 간
	출 판 부	신학교재 및 연구도서 발행	
	총 신 대 보 사	대학신문	1972. 3. 2 창간
	총 신 원 보 사	신학대학원 신문	1981. 4. 26 창간
	교 육 방 송 국	대학방송	1974. 4 개국
	섬 김 리 더 교 육 원	대학생들의 경진 훈련 지도를 통한 지도자 배양	
	평 생 교 육 원	<p>총신학대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능력 개발에 기여하며, 나아가 교회와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점은행제(주중반) : 학위과정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여 학사 학위 취득,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1) 학사학위 과정 : 신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회음악, 상담학, 청소년학 2) 국가공인자격증 과정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건강가정사 2. 전문교육이카데미 : 비학위과정 교회교육,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 1) 교회 여성사역자 : 2) 기독교심리상담 : 3) 교회교육 : 4) 국가공인자격증 : 5) 민간자격증 : 시니어, 카페 취·창업, 미술심리지도사 3. 콘서바토리 - 영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음악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위 과정과 1:1레슨 중심의 비학위과정 운영 	1999년 3월 설립



구분	기 관 명	주요사업내용	비 고
		1) 학사학위 과정 : 교회음악 전공(실기 및 이론) 2) 비학위 과정 : 교회음악지도자과정(기초난이도), 최고연주자과정(고급난이도), 반주법(성악/기악 등), 즉흥예배반주과정(교회반주) 4. 한국어학당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운영	
부 속 · 부 설 기 관	부속원격평생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온라인수업을 활용하는 총신대학교 부속원격평생교육원은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서버·1소프트웨어·네트워크 보안·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고 학사운영플랫폼(LMS)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국가평생교육원 인증기관임 ○ 특히 총신대학교 부속원격평생교육원은 대학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원격 신학교육기관으로서, 우리 대학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전임교원과 우리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사들로 구성된 학부 수준의 표준 신학교육과정(22개과목 66학점)을 개설하여 우수한 신학교육을 하고 있음. ○ 개설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학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한국어교원2급자격증 과정) - 사회복지학 전공(사회복지사자격증 2급 과정) 	2013년 설립
	경 건 훈 련 원	재학생들의 경건훈련의 중심 / 관 입사를 통한 전 인격적 신앙지도 미래 교회지도자들의 신앙인격 수 양의 산실	
	산 학 협 력 단	대학과 교회와의 협력모델 개발 대학 지식 산업의 개발과 적용 연구 대학 외부연구비 관리	
	총 신 상 담 센 터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과 기독교진로 상담 운영 및 연구 학년별 집단 및 심리 상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및 성고충상담 운영 생명존중캠페인을 통한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관리	

구분	기 관 명	주요사업내용	비 고
부 설 연 구 소	교 회 선 교 연 구 소	한국교회문제연구, 진단 선교정보의 수집, 분석, 방향제시	학 술 지 발 간 각 종 세 미 나 개 최
	기 독 교 교 육 연 구 소	1. 목적: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기독교 교육 발전 2. 목표 1)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역량 강화 2) 연구소에서의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지원 3)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의 연계된 기독교 교육의 현 장성 강화 3. 연간활동 1) 1학기 중에 총신대와 고신대의 기독교교육연구소 주관 하에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신대와 고신대 교수들이 양 학교를 교차 방문하 여 논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을 보완하여 논문집으로 출판한다. 2) 2학기 중에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의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매 해 다른 주제를 통해 교수나 목회자, 박사들을 초청하여 기독교교육 제 반 학문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세미나의 발표 논문들을 취합하여 기독교교육연 구 소 학술지 “기독교교육연구”를 발행한다.	
	성 지 언 어 연 구 소	성경지리 연구 및 답사 올바른 성경주석을 위한 연구 및 언어 교육 성경연구프로그램 공동구매 및 설명회 개최 성지, 언어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교 회 음 악 연 구 소	교회음악의 흐름과 발전방향을 연구 및 제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연주회 개최 교회음악전공자의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별첨] 정관 및 운영이사회 규칙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최종시행일 2020.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3. 01. 30〉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총신대학교
2.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에 둔다. 〈개정 2014.06.05.〉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7.〉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개정 2011. 03. 08., 2012. 06. 04, 2017.09.15.>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2018.06.01>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09.15.>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



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총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 중에서 취임한다. <개정 2017.10.26.>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중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2017.12.26>

③ <삭제>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6.01.>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



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2(대학평의원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3(평의원의 구성) ①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4(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제31조의5(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7(평의원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8(운영규정) 평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 립 업
2. 삭제 <2013.11.09.>
3. 임 대 업
4. 삭제 <2013.11.09.>

5. 학원운영업
 6. 원격평생교육시설
 7. 삭제 <2013.11.09.>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개정 2013.11.09.>
-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전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1.09.>
-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에 둔다. <개정 2014.06.05.>
-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의 근본 목적과 동일한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귀속된다.
-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명

-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신규 임용교원의 임용기간은 1차에 한하여 정년계열의 조교수·부교수는 2년, 교수는 3년으로 하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매 임용 시마다 2년으로 한다.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전임교원 구분	정년계열			비정년계열
	조교수	부교수	교수	조교수
임용기간	6년	7년	정년까지	2년

<개정 2019.06.28., 2020.02.07>

- ③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과 각 대학원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3.05.10.>
- ④ <삭제> <개정 2019.06.2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가 실제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0.02.07>

⑥ 대학교 교원은 학부,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2.27.>

⑦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대학교 석좌교수와 명예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대학교의 강사, 객원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의 장에게 그 임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6.28, 개정 2020.02.07.>

[제목개정 2020.02.07.]

제39조의2(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그리고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9.06.28.>

②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06.28.>

③ 전임교원이라 함은 정년계열의 교수·부교수·조교수와 비정년계열의 조교수를 말하고, 중점 직무수행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9.06.28.>

1. 정년계열 전임교원 : 교육, 연구, 봉사, 학생 지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교육, 연구, 봉사, 학생 지도, 취업 지도를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신설 2019.06.28.>

2.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신설 2019.06.28.>

가. 교육중점교원 : 강의와 연구를 중심으로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강의와 연구를 중점적으로 평가받는다. 단, 원어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06.28.>

나.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채용형과 지정형으로 구분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실습지도, 사회봉사 지도 또는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신설 2019.06.28.>

④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9.06.28.>

⑤ 강사는 담당 교과목에 관한 강의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교육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신설 2019.06.28.>

[신설 2013.05.10.]

제40조(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7.>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임용권자의 요청이나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8.06.0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안식년에 해당하여 연구하게 된 때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1조 제11호의 사유는 인한 휴직기간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직위의 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개정 2017.09.15.>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7.09.15.>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7.09.15.>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④ 임용권자는 제 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09.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⑥ 교원에게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2017.10.26>

⑦ 삭제 <2017.10.26.>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정관 제4관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회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6.]

제47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정관 제4관 제2절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본조신설 2017.10.26.]

제48조(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 교직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제도를 두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2.07.>

[제목개정 2020.02.07.]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비전임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5.10., 2020.02.07>
2. 정년보장교원임용 또는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5.10.>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특별채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5.10.>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강의평가 및 취업지도실적 <신설 2013.05.10.>

제52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 제53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부총장 중에서 임명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05.10.>
-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5.10.>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0.>
- 제54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5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 제56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기와 간사를 둔다. <개정 2013.05.10.>
- ② 서기는 교원인사위원중에서, 간사를 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5.10.>
- 제57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관 복무 [개정 2013.05.10.]

제57조의2(교원의 복무) 교원의 복무는 교원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05.10.>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단, 1인의 위원은 외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01.>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6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62조(위인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7.>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01., 2018.06.29>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청의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06.29.>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8.06.01., 2018.06.29>

제6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9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70조 제70조 내지 제83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별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06.05.>

1. 금치산 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6.05.>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의2(직원인사위원회) ① 직원 임용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 <개정 2013.11.09., 2020.02.07>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9명 이하의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직원 4명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13.11.09, 2014.06.05., 2020.02.07>

③ 직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지원처장이 한다. <개정 2014.06.05., 2020.02.07>

④ (삭제) <개정 2020.02.07.>

⑤ 기타 직원인사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05.10.]

제86조(신분보장 및 복무) 일반직원의 신분보장과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 8급은 58세, 9급은 55세로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의 경우는 58세로 한다. <개정 2013.11.09., 2014.06.05>

제89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둔다. <개정 2018.06.01., 2018.06.29.>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90조(법인사무조직)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 사무국에는 법인과를 두며 과장(또는 차장)은 부참사(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1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③ 대학교에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 대학 담당 부총장 및 대학원 담당 부총장을 두며 교수는 또 는 부교수로 보하고, 신학대학원 담당 부총장은 신학대학원장이, 대학원 담당 부총장은 대학원장 이 겸임한다. <개정 2013.02.27.>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대행한다.

제92조(대학원장 등) ①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선교대학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사회 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13.11.09., 2014.06.05>

- ② 각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 ③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3조(삭제) 제93조 <삭제>

제94조(하부조직) 대학교의 하부조직은 직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6.05.>

제94조의2(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 학교에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둔다.
- ③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 ④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처에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02.27.>

제95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 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교에는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부설기관을 두며 부설기관의 장은 교직원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3.11.09.>

1. 평생교육원
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3. 한국어 어학당
4. 외국어 어학당
5. 대안학교
6. 기독교대안교육지원센터
7. 총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8. 다문화연구소 <개정 2013.11.09.>
9. 건강가정지원센터
10. 기독교복지지원센터
11. 중독재활상담연구소 <신설 2013.11.09.>
12. 아시아개혁주의선교센터 <신설 2013.12.06.>
13. 개혁신학연구센터 <신설 2013.12.06.>
14. 전임교직원훈련원 <신설 2013.12.06.>



- ② 대학교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6조의2(위탁시설) ① 대학교에는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유치원

- 제97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정원

제98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제8장 보 칙

제99조(공고) 이 법인이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기독교신문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생년월일	주 소
이사겸이사장	백남조	67.5.2~71.5.1	1913.11. 1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390의1
이 사	김인득	"	1915. 8.17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의1
"	곽창후	"	1923. 3.29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66
"	김윤찬	"	1905. 8.23	서울시 중구 동자동 22의23
"	김창인	"	1917.10.24	서울시 중구 목정동 31의1
"	정규오	"	1914.11.11	전남 광주시 금남로 4가 79
"	양화석	"	1901.12.21	충남 대전시 선화동 12의 3
"	고성훈	67.5.2~69.5.1	1917. 8.11	서울시 중구 예관동 6
"	양재열	"	1922.12.18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64의 6
"	김철호	"	1910. 4.10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102의90
"	노진현	"	1904. 8.28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85
이 사	이환수	"	1909. 2. 8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97의 21
"	정순국	"	1915. 3. 8	경남 진주시 본성동 116
감 사	정봉조	"	1912.10. 5	충남 논산군 논산읍 화지동 32
"	이성현	67.5.2~68.5.1	1924. 6.20	대구시 중구 대신동 180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6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6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7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7호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결격사유 해당자).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8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당해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8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인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원장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종전 정관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일반직원은 이 정관의 정년을 적용한다.
-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가산하여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원장 등의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⑤ (인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회 및 예·결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가산하여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의 임용기간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의 임용기간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1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09.)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06.)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6.0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1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26.)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6.)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0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6.0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6.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6.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